

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 심의(안)

의안 번호	2017-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0. .

제출자 : 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.

2. 출연개요

- 근거법령 : 「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
- 대 상 :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(대표 양동인)
- 사업비 : 665,000천원(출연 예정금액)
- 2018 예산편성 요구사항 (단위:백만원)

사업기간	2017년 예산액	2018년 요구액	재 원 별				
			계	국 비	도 비	군 비	기 타
2018년	665	665	665			665	

- 사업내용 : 원어민 보조교사지원,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

3. 부서의견

- “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에 따른 군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
-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·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4. 참고사항

- 출연 기관현황 : 붙임 1
- 관계 법령 : 붙임 2

[붙임 1]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(출연기관)

설립근거	법 률 : 교육기본법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: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			전화번호 : 055-940-8812 홈페이지 : www.gcdream.kr			
	주요연혁 - 설립연도 : 2005 . 12. 16 -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: 2009년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 출연			
인원현황 (‘17.10.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17명		명		17명		
임 원 (‘17.10.기준)	직 책 (직책명)	성 명 (의명처리)	주요경력		임 기		
	이사장 (당연직)	양○○	거창군수		당연직(재직기간)		
	상임이사	신○○	민주평통회장		2016.10.31.~2018.10.30		
	이사	박○○	거창군교육장		당연직(재직기간)		
	이사	강○○	모동기업대표		2005.12.16.~2017.12.15		
	이사	이○○	군립요양병원장		2017. 4.17~2017.12.15		
	이사	송○○	전 창호초등학교 교장		2016.10.31~2017.12.15		
	이사	최○○	화성건설 대표		2005.12.16~2017.12.15		
	이사	오○○	전 거창중학교 교장		2016.10.31~2018.10.30		
	이사	김○○	경남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장		2016.10.31~2018.10.30		
	이사	도○○	전 거창홍사단 대표		2013.12.16~2017.12.15		
	이사	최○○	김순호세무회계사		2013.12.16~2017.12.15		
	이사	강○○	거창위생 대표		2013.12.16~2017.12.15		
	이사	민○○	거창신문 대표		2016. 8. 5.~2018. 8. 4		
	이사	양○○	의용소방연합회 회장		2016.6.10.~2017.12.15.		
	이사	이○○	함께하는 거창 대표		2016.6.10.~2017.12.15.		
	감사	이○○	이재민세무사대표		2013.12.16~2017.12.15		
	감사	표○○	YMCA 이사장		2016.9.29~2017.12.15		
주요기능	-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						
자본금 ¹⁾ (단위:백만원)		10,515 (직전연도말 기준)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11,000 (직전연도말 기준)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5	2016	2017	재무현황 (백만원) ‘16.12.31기준	자산	10,392 (자산 총액)
	예산액	13,228	11,830	11,083		부채	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	1,400	1,000	665		자본	10,392 (자본금 총액)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16.12.31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11,633			1,261		10,372	

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(평생교육센터)

(제정) 2005.10.05 조례 제1761호

(일부개정) 2008.01.14 조례 제1878호

(전부개정) 2011.01.05 조례 제2014호

(일부개정) 2014.12.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

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,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)

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(이하 “장학회”라 한다)는 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정관)

장학회의 정관은 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한다.

제4조(임원)

-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
- 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, 거창군수, 거창군 의회의장,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.
-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·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5조(이사회)

-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조(사무국)

-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-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7조(사업)

-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
 - 2. 지역인재 육성·지원사업
 - 3. 교육여건 개선사업
 - 4. 국내·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
 - 5.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재산의 조성)

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1.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
- 2.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
- 3.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
- 4. 그 밖의 수입금

제9조(재정지원)

-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장학회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,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(타조례개정 2014.12.31.)

제10조(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)

군수는 장학회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행정지원)

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공무원의 인력지원)

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.

제13조(보고 및 검사 등)

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규정)

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<전부개정 2011.01.05, 조례 제201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.12.31.)

제1조 ~ 제3조 (생략)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⑩ 「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「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”로 한다.